

□ 학생

-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, 국내 대학\*에 재학 중\*\*인 경제적·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

\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(종합교원양성대학 포함), 전문대학,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(대)

\*\* 대학 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 상태가 아니며, 휴학을 하지 않은 학부 재학생

【경제적·사회적 취약계층 판단 기준】

구분	선발 대상	
	소분류	세부 내용
경제적 취약 학생	지원구간 상 저소득층	○ 학자금지원 5구간 이내 학생 (기초·차상위~지원 5구간)
	기타	○ 가계 소득이 5구간 이하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학생 ○ 그 밖에 가계 곤란 학생 등
사회적 취약 학생	장애 학생	○ 도우미 1인 도움을 받아 해외 체류가 가능한 장애 학생 ○ 심층 면접, 의사 소견서,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여부 결정
	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	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 대상자
	자립준비청년	○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써, 5년 이내 보호 종료된 학생
	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소년	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1조 상 청소년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보호받은 자로써 입소 중이거나 5년 이내 퇴소 학생
		탈북학생, 다문화 학생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학생

※ 사회적 취약 학생은 경제적 선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선발 대상 포함

- 사전교육·현지 연수·사후 관리 등 파란 사다리 연수프로그램 전 과정을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는 학생
-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
-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\*, 대학원대학, 기술대학, 각종 대학의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

\*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

- 참여 신청일 기준 당해 학기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결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

**【복지 자격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범위】**

- (인정 범위)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파란사다리 사업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·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, 복지 자격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으로 판정

구분	자격명	비고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
	의료급여수급자	
차상위계층	주거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
	교육급여수급자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이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이동수당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계층 대상자	차상위계층 확인서

- 기본적인 선발요건 외에 대학의 자율적 판단으로 관련 서류 증빙, 면접 등을 거쳐 경제·사회적 취약 학생 선발 가능
- 교육부 ‘대학 글로벌 현장학습’, ‘한·일 대학생 연수’, ‘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’, ‘WEST 프로그램’ ‘하계 파란사다리 사업’ 기 참가자는 참가 제한
  - ※ 단, ‘파란사다리’ 참가자는 추후 ‘한일 대학생 연수’ 또는 ‘WEST’ 프로그램 참가 가능
- 참가 신청은 1개의 대학에만 접수 가능
  - ※ 복수의 주관대학에 신청 불가하며, 적발 시 탈락 가능